

05 FTA와 품목분류



탄소의 관세화 : 2026년 CBAM 확정 기간과
무역 질서의 재편

탄소의 관세화 : 2026년 CBAM 확정 기간과 무역 질서의 재편



양승석
덴톤스리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김희선
덴톤스리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부영
덴톤스리법률사무소
전문위원



김완주
관세법인 크로스웨이
관세사

1. 탄소, 이제는 '비용'이 아니라 '관세'다

2026년 1월 1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전환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확정 기간(Definitive Period)'에 돌입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탄소 배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CBAM의 도입은 이러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탄소 배출량은 더 이상 '관리 대상 지표'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곧 수출입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관세 비용'이자,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CBAM은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가 되었다. 기존의 관세, 원산지, 통관 전략에 더해 '탄소 데이터 관리'라는 새로운 축이 무역 실무에 결합되면서, 기업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복합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경쟁력의 재정의를 촉발하고 있다. 탄소 효율성이 곧 가격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 CBAM은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2. 무역 행정과 탄소 회계의 융합

CBAM의 핵심은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기준으로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데 있다. 이는 기존 EU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역외 생산품과 EU 역내 생산품 간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되는 확정 기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다.

- 단순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 실제 탄소 비용(인증서 구매)이 발생
- 국가 평균값이 아닌 '실제 배출량(Actual Data)' 기반 산정 의무화
- EU 승인 검증기관을 통한 제3자 검증 필수
- 수입자 중심의 연간 신고 체계 확립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는 'CN 코드(Combined Nomenclature)'이다. CBAM은 대상 품목을 개념이 아닌 '8자리 CN 코드'로 정의하며, 이 코드에 따라 배출량 산정 범위, 공정 경계, 전구물질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즉, CN 코드는 단순한 품목 분류 체계를 넘어, 탄소 배출량 산정의 '설계도'이자 법적 책임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잘못된 코드 분류는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과소·과대 비용 산정, 나아가 규정 위반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또한 CBAM은 생산 공정 단위의 정밀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한다. 이는 기존 사업장 단위 보고 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기업 내부의 생산·에너지·원재료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만 대응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CBAM은 관세 행정, 회계,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무역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2.1. CBAM 제도의 개념과 의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조정 비용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는 EU 내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이미 부담하는 탄소 가격을 역외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탄소 누출(Carbon Leakage) — 즉, 엄격한 규제로 인해 생산이 저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되는 현상 — 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6년 기준 대상 품목〉

현재 CBAM 대상 품목은 탄소 배출 강도가 높고 누출 위험이 큰 기본 소재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다운스트림 제품(철강·알루미늄 기반 가공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품목군	대상 CN 코드 8자리 기준
시멘트	2507.00.80, 2523.10.00, 2523.21.00, 2523.29.00, 2523.30.00, 2523.90.00
전력	2716.00.00
비료	2808.00.00, 2814, 2834.21.00, 3102, 3105
철강	72(일부 제외*), 7301~7311, 7318, 7326, 2601.12.00
알루미늄	7601, 7603~7608, 7609.00.00, 7610~7614, 7616
수소	2804.10.00



〈향후 하공정제품 확대대상 품목〉

단계	예상시기	주요 검토 및 확대 대상 품목
1단계: 기존 품목의 하공정	2026년~2027년	유기화학물(Organic Chemicals), 플라스틱(Polymers)의 하공정 제품군
2단계: 복합 가공 제품	2028년~2030년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건설용 복합 자재 등
3단계: 최종 완제품	2030년 이후	가전제품, 운송 수단(완성차) 등 EU ETS 대상 시설에서 제조되는 품목 전체

2.2. 2026년 CBAM 주요 개정 사항

CBAM의 전환 기간(2023.10. ~ 2025.12.)이 보고 의무 이행에 집중된 '준비 단계'였다면,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확정 기간은 본격적인 재정 의무가 발생하는 '실행 단계'이다. 이 시점부터 수입자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확보해야 하며,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한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비록 실제 인증서 판매 개시 시점은 2027년 2월로 조정되었으나, 제도 시행 초기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환 기간과는 차별화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구분	전환 기간 (~2025년)	확정 기간 (2026년 1월 1일 ~)
인증서(Certificate) 구매	의무 없음 (보고만 수행)	배출량만큼 인증서 구매 및 제출 의무
배출량 산정 방식	국가 기본값(Default) 한시적 허용	실제 고유배출량(Actual Value) 산정 원칙
제3자 검증	의무 없음	EU 승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필수
면제 기준 (개정)	수입 건별 150유로 미만 면제	연간 수입량 50톤 미만(비중 미미 시) 면제
적용 범위	6대 품목 (철강, 알루미늄 등)	하공정 제품 및 대상 품목 확대 검토

2.3. 수출자의 배출량 보고서 제출의무

2026년 확정 기간의 시작은 EU 수입업자가 '승인된 신고인' 자격을 취득하고 연간 단위의 CBAM 신고 체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수입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소각해야 하는데,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수입분부터 즉시 적용되나 실제 판매는 2027년 2월 1일부터 개시된다.** 이러한 수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은 전적으로 한국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업자에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엄격한 시한 내에 공신력을 갖춘 서류를 확보해야 하는 실질적 의무가 발생한다. 수출업자는 EU 수입자가 매년 8월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반드시 EU가 승인한 검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제3자 검증보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내재배출량 산정 데이터'를 완비하여 제공해야 한다.

2.4. 관세 행정의 핵심, CN코드와 CBAM의 법적 정합성

CBAM은 단순히 탄소량을 보고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확한 품목 분류에서 시작되는 관세 행정의 연장선이다. 특히 제품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CBAM의 특성상, 8자리 CN 코드는 산정 범위와 법적 책임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배출량산정 단위 변화로 인해 강화된 CN 코드의 중요성

CBAM의 산정체계 변화로 인해 만약 한 공장에서 철강(CBAM 대상)과 플라스틱(CBAM 비대상)을 동시에 만든다면, ETS에서는 합산해서 보고했지만 CBAM에서는 철강 공정에 투입된 에너지만을 분리(Allocation)해야 한다.

이때 분리의 기준이 바로 유럽 연합의 통합 관세 품목 분류 체계인 CN(Combined Nomenclature)코드이다.



〈ETS사업장 단위 vs CBAM 생산공정 단위〉

기존 ETS (Entity-Level)	기존 ETS (Entity-level): 법인이나 사업장 전체 를 하나의 울타리로 본다. 공장 전체에서 쓴 전기와 연료를 합산하여 '우리 공장에서 총 얼마가 나왔다'를 계산하는 방식
CBAM (Production Process-level)	공장 전체가 아닌 ' 특정 제품(CN코드) '이 생산되는 공정 라인 만을 정밀하게 도려내어 산정하는 방식

2.6. 대상 품목 식별의 유일한 기준

CBAM 이행 규정은 대상 제품을 문언적 정의가 아닌 CN코드 8자리로 정의한다. 한국에서 수출 신고 시 사용하는 HS코드(10자리)가 EU 세관 통관 시 CN코드와 불일치할 경우, 기업은 의도치 않은 보고 누락(Non-compliance)으로 인한 과태료 리스크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 신고 시 10자리 HS 코드를 사용하지만, EU 통관 시 CN 코드로 변환·확인된다. 만약 수출 측 HS 코드가 EU의 CN 코드와 맞지 않아 대상 품목으로 재분류되면, 의도치 않은 보고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1) CBAM 배출량 산정의 핵심 열쇠: CN 코드가 '설계도'가 되는 이유

CBAM 산정 체계는 수입 제품의 내재 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CN 코드는 단순한 제품 식별자가 아니라, 배출량 계산의 '설계도' 역할을 한다. 왜 그럴까? CBAM 규정은 각 CN 코드마다 적용되는 생산 경로(Production Pathways)와 시스템 경계(System Boundary)**를 명확히 정의해 두었기 때문이다.

CBAM 시행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의 Annex II는 CN 코드를 집합 상품 카테고리(Aggregated Goods Categories)로 매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경로, 시스템 경계, 관련 전구물질(precursors)을 지정한다. 즉, CN 코드가 확정되지 않으면 어떤 공정부터 어떤 공정까지 배출량을 포함해야 할지, '시작점'과 '끝점'을 정할 수 없다. 이는 배출량 산정이 CN 코드별로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알루미늄 섹터에서 이 점이 두드러진다. 알루미늄 제품의 CN 코드는 합금 여부(unalloyed vs. alloyed), 가공 형태(예: unwrought, foil, extruded profiles 등)에 따라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 기본 알루미늄(unwrought aluminium, CN 7601)은 주로 전해 제련(electrolysis) 공정을 중심으로 시스템 경계가 설정된다.
- 압출 제품(extruded bars/profiles, CN 7604~7609)이나 구조물(stranded wire 등)은 용해(remelting), 압출(extrusion) 공정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만약 CN 코드가 잘못 지정되면, 규정상 포함해야 할 용해·압출 공정의 배출량이 누락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공정이 포함되어 엉뚱한 계산 결과가 나온다. 이는 결국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의 과소/과대 산정으로 이어져, 수입업자의 재정 부담이나 규정 위반 위험을 키운다.

2) 전구물질(Precursors) 식별 및 내재배출량 합산

최종 제품의 고유내재배출량(Specific Embedded Emissions)은 공정 내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투입된 전구물질의 배출량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 **법적 연계:** 모든 원재료가 산입 대상은 아니다. 규정 부속서에 명시된 **전구물질별 CN코드**에 부합하는 원료만 추려내어 산정식에 반영해야 한다.
- **데이터 신뢰성:** 구매한 원료의 CN코드를 오판하여 전구물질에서 누락할 경우, 최종 산출된 배출량은 법적 무결성을 상실하며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3) 통관 물량과 배출 데이터의 동기화

CBAM 보고서는 수입업자가 EU 세관에 제출한 수입 신고 데이터와 완벽히 동기화되어야 한다.

- **중량(Net Mass):** 관세 행정상 신고된 순중량과 CBAM 보고서상 배출량 산출의 분모가 되는 생산량이 일치해야 한다.
- **검증의 기준:** 검증기관은 기업의 내부 장부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입 서류(Invoice, Packing List, 통관증명서)를 대조하여 데이터의 실재성을 확인한다.

3. CBAM이 재정의하는 기업 경쟁력의 기준

CBAM의 도입은 단순한 규제 환경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 경쟁력의 평가 기준 자체를 재편하는 신호탄이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가격이나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하며 생산되었는가'가 곧 시장 접근성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은 명확하다.

첫째, 정확한 CN 코드 분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모든 CBAM 대응의 출발점이다. 둘째, 생산 공정 기반의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 추정이 아닌 실측 데이터 확보가 핵심이다.

셋째, 검증 가능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CBAM은 '탄소 데이터'와 '무역 데이터'의 완전한 통합을 요구한다. 이 두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기업은 규제를 넘어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2026년은 그 전환점이다. CBAM은 더 이상 미래의 규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무역 질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의 대응 수준에 따라 향후 비용 구조와 시장 지위가 결정되고 있다.

탄소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관세이며, 전략이며, 경쟁력이다.

